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 제4선거구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원에 대한 임면, 교육, 훈련, 징계 등 인사전반에 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에 대한 사무위임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장에게 위임한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등의 임용권을 삭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 정비를 통해 사무위임 관련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 드린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